

의안번호	2211588
의 퇴 인	배준영 의원
회 답 일	2025. 7. 24.
추계번호	25F38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의 취득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의 취득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5년간 총 8.10억 원(연평균 1.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30년 5년간 총 8.10억 원(연평균 1.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제8조)	제1항	1.19	1.19	1.19	1.19	1.19	5.95	1.19
	제2항	0.43	0.43	0.43	0.43	0.43	2.15	0.43
합계		1.62	1.62	1.62	1.62	1.62	8.10	1.6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취득세 면제액(1.62억 원)은 수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비용추계대상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영농시설의 정비사업을 일컬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지대별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농지법」 제28조)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개정안에 따라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취득세 면제액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최근 3년('21~'23)간 연평균 취득세 면제액은 1.62억 원 수준

[표 2] 최근 3년 취득세 면제액: 2021~2023년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 농지	1.01	1.31	1.26	3.58	1.19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농업진흥지역 등 교환분합 농지	0.72	0.46	0.11	1.29	0.43
소계	1.73	1.77	1.37	4.87	1.62

자료: 통계청, 「취득세 비과세 감면현황」, 각 연도

- 개정안에 따라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의 취득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5년간 총 8.10억 원(연평균 1.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30년 5년간 총 8.10억 원(연평균 1.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제8조)	제1항	1.19	1.19	1.19	1.19	1.19	5.95	1.19
	제2항	0.43	0.43	0.43	0.43	0.43	2.15	0.43
합계		1.62	1.62	1.62	1.62	1.62	8.10	1.6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